

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인력(제10조 관련)

1. 시설 및 장비

- 가.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축된 사무실
- 나.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
- 다. 조직기증자 긴급 이송수단

2. 인력

- 가. 의사자격이 있는 의료관리자(겸임 가능) 1명 이상
- 나. 조직기증지원 간호사 6명 이상
- 다. 사회복지사(전임) 1명 이상
- 라.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이상